

2013년 제2회 이사회 의사록

□ 일시 : 2013. 03. 25(월)

□ 참석 : 9명

- 이사 : 김성현 의장, 이기석이사장, 우천수상임이사, 박기호이사
한철희이사, 나중한이사, 최근식이사, 문병용이사, 김두성감사

□ 주요내용

의 안 내 용	개최결과
<p>□ 전회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안번호 제1호 :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○ 주요 개선의견 : 특이사항 없음 	-
<p>□ 주요 추진실적 보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단 비상임이사 취임, 경영평가 대비 실적보고서 작성 등 추진사항, 인력관리, 구민체육센터 주차게이트 성능 개선공사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무대기계 자동화공사, 정보도서관 책소독기 설치, 느티나무봉사단 봉사활동, 주요 위수탁 사업 및 임대차계약, 나루아트센터 공연일정 등, ○ 주요 개선의견 : 특이사항 없음 	-
<p>□ 의안번호 제2호 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개정(안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요 내용 : 신규직원 임용시 종전 실무경력1년 미만 신규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경력에 상관 없이 수습임용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 ○ 주요 개선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직원 임용시 수습기간이 6개월인지,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(000이사) - 규정상 6개월 임을 설명.(소관부서장) 	원안의결

의 안 내 용	개최결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임용 후 6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팀원들과 어느정도 정(情)도 들 것이고 당사자의 경우도 수습기간이후 정식 채용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임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(000이사) - 수습임용된 직원의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상위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계속근로를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습기간의 업무능력과 조직 융화력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됨을 설명. (이사장) - 종전에는 채용전 실무경력 1년 미만자에게만 적용하던 수습기간을 신규임용자 전체에 적용 하는 개정안건 동의 (이사회 의장) 	<p>원안의결</p>
<p>□ 의안번호 제3호 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개정(안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요 내용 : 퇴사자 및 임직원의 성과연봉 계산 시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적용 및 직원 연봉재심 위원회 위원 구성 개정 ○ 주요 개선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전 규정의 경우 성과급 지급기준을 매우 어렵게 정의 하고 있음.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고 안전 행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매년 예산편성기준이 변경 될 때마다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요인이 있음.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성과연봉 계산시 적용하여함을 설명. (이사장) - 예산편성기준을 준용, 적용하는 것에 동의함. 다만 아쉬운 점은 경영평가 결과로 인해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등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. (000이사) 	

의 안 내 용	개최결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별적 특수한 사항까지 법률이 다 따라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서 예산편성기준을 일반적인 상황을 제시함. 안행부 차원에서 예산편성기준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(이사장) - 공단에서도 퇴사자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현안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요청함(이사회 의장) - 퇴직자 성과급에 대한 현안사항 내용 설명(소관부서장) - 실제로 집행하는 기준인 예산편성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.(이사회 의장) - 공단의견에 동의함 (000이사) - 연봉재심위원회 내용의 경우 예산편성기준과 상관여부 질의 (000이사) - 상관없음(이사장) - 매년 개인성과에 따라 연봉인상률이 개인별로 다르게 인상 되는데 본인의 연봉액에 대해 수용성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(이사장) - 규정상 연봉재심위원회 구성은 3급 이상 임직원 3인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으나 실제로 3급 이상 임직원은 상임이사과 3급 팀장, 이렇게 2명밖에 없는 실정임. 따라서 현실에 맞게 4급 이상 3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(이사장) - 동의함(000이사등) 	원안의결
<p>□ 의안번호 제4호 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결산(안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요 내용 : 2012년 사업년도 결산의 건 ○ 주요 개진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의자료의 결산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람 (000이사) - 결산내용 설명(소관부서장) 	원안의결

의 안 내 용	개최결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차수입금이 목표대비 감소하였는데 감소원인 질의 (000이사) - 어린이보호구역, 건축물 신개축 및 생활불편민원 해소 등, 거주자 주차구획이 감소추세이며 동절기 이상기온 등으로 수시분 주차의 수입금이 감소(소관부서장) -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의 공단 위, 수탁 시기 질의 (000이사) - 2012년 5월부터 위탁,운영됨을 설명(이사장) - 배수지 축구장의 기대이상 수입거양, 운영시간 질의 (000이사) -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많아 예약 대기자가 많음(이사장) - 결산자료 중 부채에 대해 설명요청(의장) - 부채내용 설명(소관부서장) - 2012년 사업년도 결산보고서를 검토하니 예산집행률이 96%로 예산 집행률이 적정, 결산서의 내용도 안전행정부 기준을 준수 처리됨 (이사회 의장) 	